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로 알아보는 ‘범인도피교사죄’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를 보면 주인공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낸 가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 대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소신을 지켜주는 든직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아버지는 장을 보고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바로 ‘장가’라는 대기업의 장남인 ‘장근원’에 의해서 였습니다.

장근원의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덮고,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그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대신 물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책임을 대신 물게 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이러한 범죄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라고 일컫습니다.

범인도피교사죄란, 쉽게 말해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까요?

〈사건 개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더불어 신호위반으로 인한 충돌사건을 본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



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

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의 대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범죄를 전가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명백히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1. 범인도피교사죄는 범인도피죄와 같은 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 더불어, 교사범의 행위는 법률,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과 체포,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방해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여겨져 더욱 엄중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 이야기)